

■ 서류제출기간 및 계약안내

구분	기간	장소
당첨자 서류검수	2022. 09. 13(화) ~ 2022. 09. 19(월) 10:00 ~ 16:00	사업주체 건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
정당계약	2022. 09. 20(화) ~ 2022. 09. 22(목) 10:00 ~ 16:00	

■ 제출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 유의사항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함.(대리발급분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 자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접수장소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세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한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캡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제출]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단신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청약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대리인 신청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접수 장소에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2.08.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관련법규	해당기관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 포함 발급)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 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 등록증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판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 각서(견본주택 비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제출	·세무서 ·접수장소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 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 공급 (상위소득, 20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 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임부해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자산보유[부동산 소유] 시 증빙서류 안내[발급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인증서 필요']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 접속 ②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소유현황'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의 후 '확인' 클릭 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주민등록번호 공개) ⑥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⑦ 팝업에서 '확인' 클릭	⑧ 결제화면으로 이동 ⑨ 결제방법 선택 및 결제 진행 ⑩ 미열람보기 ▶ '열람' 클릭 ⑪ 부동산 소유현황 '인쇄' 아래 증빙서류 안내에 따라 ⑩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격 합산 (3.31억원 이하 확인)	⑧ 조회내역 없음 ⑨ 해당화면 인쇄[Ctrl+P] 서류제출 시에 ⑨ 인쇄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인증서' 지참 필수 +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자치단체) 발급 제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사이트 접속 ②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물건지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 자산보유[부동산 소유] 시 공시가격 서류발급 안내

건축물 종류		발급기관	발급방법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공동주택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단독주택	① 사이트 접속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 주소 입력 ▶ 열람하기 ▶ 출력 ② 사이트 접속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주택 외	서울 소재지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사이트 접속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 외 건물시가 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조회 ▶ 상세보기 ▶ 출력
		그 외 지역 소재지	위택스 (www.wetax.go.kr) 사이트 접속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주소 입력 ▶ 검색 ▶ 출력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동 ▶ 주소 입력 ▶ 조회 ▶ 출력 ※면적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 발급	